

言論과 國家發展

때 : 1984. 11. 9~11

곳 : 大邱 壽城觀光호텔

主題論文 : 崔 錫 采(編協顧問·大邱每日名譽會長)

1. 韓國言論의 傳統

올해로써 지난 64年의 이른바 「言論波動」 20年을 경과했다. 現在와 같은 言論狀況에서 구태여 過去의 歷史를 회상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떤 意味로든지 韓國言論發展史에 지울 수 없는 큰 紀念의 언덕이 될 “鬭爭”의 자취를 되돌아보고 整理하며 그 價値를 定立해 둘 必要가 있을 것이다. 미리 前提해 두지만, 20年이란 세월이 가져온 世界情勢의 變化, 눈부시게 發達해 가는 情報社會의 科學化, 技術化 그리고 안으론 中進國으로 발돋움한 우리 韓國의 國家發展과 이와 더불어 더욱 복잡해져 가는 社會 全般의 놀랄만한 變遷에 눈을 감고 20年전에 지녔던 “言論의 價値觀”을 그대로 오늘에 適用시키겠다는 意圖에서 이 講演을 수락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第5共和國 出帆 이래 새로운 “言論의 價値觀”을 앞세우기에 급한 나머지 마치 「歷史의 中斷」을 여기에도 試圖하려는 듯, 지난날의 韓國言論의 傳統的인 「反骨精神」을 싸잡아 國家 發展에 否定的인 要素라도 되는 것처럼 白眼視하는 일부의 경향엔 韓國言論史의 名譽를 걸고서라도 그냥 참고 지나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 時代의 言論을 맡아온 대다수 言論人들의 솔직한 心情이다. 여기서 64年度의 「言論波動」을 想起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 鬭爭이 韓國言論의 傳統的 「反骨精神」의 精華였기도 하였

고, 또 한편으로 그 波動의 收拾이후에 展開된 우리 言論狀況이 과연 어떻게 變質돼 왔는가를 分析해 봄으로써 오늘의 問題點을 正確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널리 알고 있다시피 韓國의 言論은 草創期부터 「反骨精神」 「抵抗의 傳統」이 宿命的으로 胞胎돼 왔었다.

단계적으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舊韓末의 開花期에 태어난 우리 言論의 先覺者들은 產業의 하나거나 職能의 하나로 言論을 選擇한 것이 아니라 開化의 手段으로, 民族獨立精神의 旗幟로 言論을 그 據點으로 삼아 國民啓蒙의 앞장에 섰다.
- ② 日帝治下 나라를 잃은 國民의 사무친 슬픔을 抗日·救國運動의 鬪志로 이끌고 外勢와 對抗해 나간 우리 「民族誌」들의 큰 役割을 評價해야 한다.
- ③ 解放 직후의 思想的 混亂期에 「反共」의 理念을 꽃피우고 大韓民國의 建國에 힘써온 것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몇 안되는 新聞의 「反骨精神」이 그 基軸이 되어 왔다.
- ④ 基本的인 民主秩序가 짓밟히던 40年代의 獨立的 暗黒期에 이 땅의 民主主義를 지켜 내고자 모진 苦難을 헤쳐나온 自由 言論의 命脈 역시 우리 言論人들의 「反骨精神」이 나타낸 時代的 使命感이었다. 4·19義舉로 昇華한 民族力量이 反動力이었다 할 수 있다.
- ⑤ 軍事革命 政府 아래서 「民主回復」을 위한, 國民의 念願을 배경으로 우리 言論의 主流는 그 어려운 環境 속에서도 줄기차게 「自由」를 내세웠고, 韓國言論의 傳統을 固守했다.

이러한 일련의 歷史를 더듬어 보면서 한편으로 64年 이전에 이미 言論은 우리 社會에의 民主主義 土着化를 위한 「言論의 責任」에 대한 知性으로서 新聞編輯人協會를 構成함과 동시에 「新聞倫理綱領」 「倫理實踐要綱」을 순전히 自律的으로 制定하고, 「新聞倫理委員會」와 「新聞研究所」를 發足시킴으로써 자체적인 淨化運動과 責任을 遂行하려는 자체努力을 展發해 왔다는 事實을 특기할 必要가 있다.

2. 「言論波動」의 回顧

64년에 政府가 「言論倫理委員會法」制定을 서두르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우리 言論界가 志向했던 「言論의 價値觀」과 權力측이 바라는 「言論의 價値觀」과의 갈등에서 빚은 것이고 보다 직접적인 動機는 이른바 「6·3事態」라 불리는 「韓日協定反對데모」로 자극받은 데서 나온다.

1964年 8月 2日, 이 法案이 國會에서 變則的으로 通過되자 編協은 즉각 「違憲의 이고 非民主的인 惡法」이라고 규정하고 그 反對鬭爭에 나섰다. 感情的인 反撥이 아니라 「違憲的」이라고 分析한 根據를 提示했다.

1962년에 全面 改定됐던 당시의 憲法엔 第18條 ②로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認定되지 아니한다. 다만 公衆道德과 社會倫理를 위하여는 映畫나 演藝에 대한 檢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言論의 自由에 대한 폭넓은 保障을 했었다. 「言論倫理委員會法」은 第13條 ① 審議會 判定으로 “會員資格의 停止 또는 除名”의 權限을 부여했다. 이것은 「간접적인 方法」으로 恣行될 수 있는 「許可制」다. 비록 「秩序維持」라는 大義名分으로 立法의 權限이 있다손 치더라도 憲法 第32條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는 後段의 制限이 있다. 「倫委法」의 「間接的인 許可制」가 이 「本質的인 內容」 즉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는 認定되지 아니한다」에 正面으로 저촉된다고 編協은 判斷한 것이다. 왜냐하면 「審議會의 判定」에 不服하면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는 強制規定(同法 第19條)이 있기에 倫委에서의 除名 또는 委員資格의 停止判定은 자동적으로 言論의 廢刊이나 停刊 處分과 같은 效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言論에 대한 官權위주의 統制가 「非民主的」인 試圖일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리하여 發端한 政府와 言論간의 對立은 40日間の 거센 파란을 야기시켰다. 그 상세한 경과와 抗爭의 양상을 소개하자면 것이 目的이 아니기에 省略하거나 어쨌든 일부

發行人을 제외한 이 나라 言論界 전체의 團結과 鬪志로써 일단 소기의 目的을 관찰하고 9月 10日 政府는 이 法의 「全面施行保留」를 公表했던 것이다.

論者 가운데는 이것이 鬪委가 처음에 要求했던 「法の廢棄」가 아니고 「施行保留」였다는데서 言論界가 中度에서 挫折한 것으로 批判하는 見解도 있다.

그렇다면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嗚히 發表하라」(公約 3章 第2項)했던 3·1獨立宣言書가 歷然함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韓民族」이 모조리 잡혀가 獄死를 당할 때까지 싸우지 않았느냐고 3·1運動을 批判하는 것과 같은 極端論이 아닐 수 없다. 敵이 아닌 우리의 政府權力을 상대로 正當한 要求를 내걸어 言論의 自由와 權利를 守護해 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廢棄 아닌 保留라 해서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 오히려 發想이 나변에 있건, 또 政治事情이 여하했건 막강한 國家權力이 「後退」라는 威信損傷에 구애치 않고, 마지막 순간에서 言論界의 主張에 正當性이 있다고 受容한 그 당시 政府의 民主主義的 度量은 言論界의 「反骨」이상으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1965年 런던에서 開催된 IPI 年次總會에서 韓國言論의 勇氣있는 鬪爭과 그 前提가 되는 自律的 倫理實踐活動, 民主的 妥協을 보여준 韓國政府에 다같이 讚辭를 보내고 “全世界 自由言論의 模範”이라고 激勵하는 決議가 있었던 것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3. 60年代의 批判機能

우리 言論의 傳統的인 「抵抗精神」이 빛낸 이 「言論波動」이후의 과정에 이제 우리는 심심한 留意의 눈길을 돌릴 必要가 있다. 忌憚없이 말해서 어떤 民主的인 政府權力일 지라도 그리고 「言論」의 自由와 權利를 金科玉條로 내세우는 民主社會에서도 항상 權力은 자기들에게 「有益」하고 「協助」的인 言論의 存在를 원한다. 이것은 權力의 鰓 수 없는 屬性이다. 反面에 言論은 어느 社會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民衆의 편에 서서 政

治權力을 견제하려는 批判精神을 그 生命으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言論의 機能은 늘 權力과 대립된 位置에 서지, 權力의 延長線上에 설 수는 없다. 아무리 言論이 政府權力에 「協助的」이라 하더라도 그 批判의 범위가 넓으나 좁으나로 그리고 批判의 強度가 어느 정도냐에 差異가 있을뿐, 政府權力에 奉仕하는 弘報가 아닌 이상 政權이나 官權의 同伴者가 될 수는 없다.

「言論波動」이후 3選改憲의 태동이 있을 때까지의 약 5年間 그러니까 1964年の 가을에서 1969年초까지는 나의 體驗으로서는 政府和 言論간의 對立과 協助는 일반적인 民主主義 原則에서 그다지 벗어나질 않았다. 고쳐 말해서 「言論의 位置」가 그 자리를 正當하게 찾았던 期間이다.

물론 이 期間에도 온갖 갈등과 試練이 繼起되었다는 것은 事實이다. 「京鄉新聞事件」, 「東洋通信社事件」, 「新東亞事件」등 끔직한 事件은 말할 것도 없고 술한 記者拘束, 連行, 筆禍의 立件소동 등등이 있었다. 그러나 평탄치 못했던 그러한 여러 마찰은 政府權力이 있고, 言論의 批判機能이 살아있는 社會라면 언제 어느 社會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法解釋의 差, 見解의 距離, 位置의 대립에서 오는 움직임은 社會의 피치 못할 不幸한 現象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歴史를 향해서 證言한다면 言論에 대한 이러한 侵害, 不祥事가 있을 때마다 우리 言論은 「그러한 事實이 있었다」, 「事件의 內容은 이러하다」고 빠짐없이 活字化할 수 있었고, 編協과 記協은 그 侵害事實에 대한 眞相調查를 하는 활발한 努力을 멈추지 않았으며, 權力측의 不當한 處事에 대해서는 正正堂堂히 抗議하는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言論은 記事와 論說로써 일일이 對抗해 나갔다는 記錄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視點에서 볼 때 60年代 後半期の 한국 言論은 굉장한 事件의 連續과 言論人의 受難이 繼起된 것처럼 活字화된 記錄이 풍성하다. 그러한 「記錄」이 많으니까 言論의 가시밭 길이었다고 皮相的으로 判斷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言論에게 活字化하는 것 이상의 武器는 없다. 活字化함으로써 國民에게 告發하고, 輿論을 형성하며 政府權力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言論의 批判機能이다. 그 批判機能이 왕성했다는 事實을 記錄이 풍성이 立證한다. 批判機能이 왕성했다는 것은 「言論의 健在」를 의미한다.

活字화된 記錄 속의 「言論侵害」 「言論에 대한 壓迫」이 차츰 수그러지게 된 것이 3選改憲이후의 일이다. 그런 「記錄」이 줄어든 것과 比例될 수 있을만큼 韓國言論의 健康度가 시들어져간 것이 3選改憲부터인 것이다. 그러면 왜 3選改憲 이후 우리 言論의 體質이 허약해져 갔을까. 「言論波動」이후의 投影을 여기서 發見해 내야겠다.

4. 言論體質의 變化過程

「言論波動」때 우리 言論界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유감이나마 여지없이 露呈하고 말았다. 巨人 아킬레스에도 「발꿈치」라는 취약점이 있듯이, 「反骨言論」의 傳統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言論波動」이었지만, 몇몇 社를 제외한 대다수 「言論經營人」들이 중도에 보여준 權力屈從의 취약성은 言論에 있어 「經營體質」이 얼마나 脆弱한가를 外形的 팽창을 支援하는데 아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競爭을 부채질했고, 또 한편으로 그에 필요한 막대한 資本投資, 施設擴張 때문에 政府權力에 의존하는 言論經營의 體質을 더욱 深化시켰던 것이다.

60年代까지의 言論의 主役이 「編輯人」이었다면 70年代부터는 言論의 主役은 「經營」측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갔다. 아무리 使命感에 철저하고 勇氣있는 言論人일지라도 그가 소속하는 言論企業에서 떠나버리면 平凡한 한 市民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言論體質이 이때부터 變化하기 시작된다. 지난 9月 14日 싱가포르發 UPI通信에는 이런 記事가 나왔었다. 「言論人을 投獄시키거나 言論機關의 門을 닫아버리는 原始的인 言論탄압방법은 사라지고 그대신 복잡한 言論關係法의 制定이나 言論機關에 대한 所有權 및 人事權에 대한 國家의 干渉 등의 보다 교묘한 裝置가 등장하고 있다」 「政府들이 구태여 言論檢閱을 실시할 必要가 없다는 事實을 터득했고 이들 政府는 言論機關의 經營陣과 重役陣을 통제하여 그들이 스스로 言論人들을 조종하도록 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事實을 알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通信記事는 84年 현재의 「아시아地域」의 「言論自由에 대한 억압實態를 살피

고 증언하는 것이지, 굳이 「우리나라 言論」을 지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70年代 이래의 韓國言論, 엄밀히 말해서 3選改憲 이후의 우리 言論 體質이 보여준 變化의 과정은 이 記事에서 많은 畧을 發見할 수가 있다.

「戰鬪에서 이기고, 戰爭에서 졌다」는 歷史의 표현이 있다. 긴 눈으로 보아 우리 言論史를 編綴할때 「言論波動에서 氣概를 높이고 결국 몇年 안가 言論經營의 體質이 바뀌어졌다」는 春秋의 筆法이 가해져도 할말이 없게 돼있다. 또 달리 한국 言論이 자랑하는 傳統으로 삼던 「反骨精神」, 「抵抗氣質」을 一時 잠재우고 우선 經營의 충실화, 外形의 整備, 合理的인 企業體制를 完成한 후에 보다 알찬 未來의 「言論正道」를 期約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忍苦의 段階」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그 어느 편이 더 正確한 「歷史의 審判」이 될지는 지금 이 段階에서 斷言하기가 어렵다. 編輯人과 記者, 그리고 使命感이 깊은 經營陣 모두의 理性和 良心, 그리고 使命感에 金후를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뿐더러 진실로 오늘의 韓國社會를 깊이 認識하고 言論의 길이 政府權力和 協助하면서 새로운 言論의 價値를 確立하는데 있다는 信念을 가진거라면 몇몇이 「國家利益」에 奉仕하는 能動的 姿勢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價値觀」의 形成이나 共感없이 지난날의 「價値觀」, 즉 反骨 精神, 抵抗의 言論氣質을 否定하기만 하는 言論風土를 納得할 수가 없다. 만일 權力측의 일부 論者가 지적하듯이 「한국 言論史의 여러 試鍊이 어떤 時代的 狀況에서나 경직스럽고 教條的이라 할 만큼 自由 일변도의 鬪爭論理를 내세우며 구사해 왔다」는 批判과 「해방후 自主獨立國家 建設이라는 歷史的 召命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西歐的 自由言論의 圖式的 流入과 함께 아무런 變容없이 그대로 작동한 結果가 한국 言論史를 어떻게 足跡지었느냐…」고 질타하는 것을 받아 들인다면 결과적으로 「4·19義舉」 자체부터 歷史的 評價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60年代의 「言論波動」이야말로 부질없는 「言論의 作態」를 象徴적으로 대표하는 立場 攢란에 不過하게 된다.

이 얼마나 自體矛盾이며 倫理的飛躍이라 해야 옳을까. 言論은 政權을 圖謀하는 政治集團이 아니다. 그 政府에서 보다 나은 國民의 生活과 自由를 지켜주기 위해 存在

하는 것이요. 權力에 抵抗하는 것은 그 政權을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政府가 憲法에 충실하고 民主的인 政治理念의 실천에 더욱 부합되도록 批判機能을 발휘하는 것이다. 抵抗精神 없는 批判力이 어떻게 해서 形成되겠으며, 現實의 非理를 적절함에 「反骨精神」 아니고서 무엇으로 作動할 것인가.

더욱이 요즘의 流行語로 「體制否定」 운운하는 험박적 言語까지 나타난다. 대체 여기서 말하는 「體制」란 무슨 뜻인지 하도 概念이 애매해서 나는 理解 못한다. 지금까지 이 通念으로 알고 있는 「體制」란 「憲法의 體制」를 의미한다.

우리 憲法은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經濟」 體制인 것이다. 憲法을 否定한다면 곧 「體制否定」이요, 「自由民主主義」에 도전하는 것이라면 「反體制」요, 「資本主義經濟體制」를 否認한다면 이 역시 「體制否定」이다. 여기까지는 명백한 論理다. 그밖에 과연 어떤 「反體制」가 있는가? 政權을 批判하는 것이 「反體制」라면 그러한 論理 자체가 「自由民主主義」를 외면하는 「體制否定」이라 할 수밖에 없다.

政府를 얼마든지 批判할 수 있다는 것은 民主主義의 초보적 原理에 속한다. 그러한 自由가 保障되어 있기에 週期的인 選舉가 實施되는 것이고 國會안에 野黨의 議席이 있는 것이다. 혹 民主主義 方式이 아닌 「暴力」 政權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思考와 行動을 「體制否定」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反國家고, 內亂罪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論外의 對象이다. 言論은 언제나 民主的 憲法 아래 存在하고 늘 그 테두리 안에서 法律이 許容하는 限度內에서 表現되는 合法的 批判機能의 言路인 것이다. 言論을 批判함에 「體制否定」 따위의 당치 않은 過激한 用語가 왜 뒤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5. 「反骨」 「抵抗」의 本質

또 한가지 理論展開의 本旨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몇가지 「어휘」를 여기서 正確하게 定義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反骨精神」이란 무엇인가? 不義와 不正에 굽히지 않는 正義感을 말한다. 不

義가 있고 不正이 행해져도 눈을 감고 못본 체하는 國民이면 죽은 백성이다. 「正義社會 具現」을 위한 國民의 要望-지금 政府도 그것을 強調하고 있다-을 대변하여 正義를 내세우고 굽히지 않는 知性的 氣像이다.

둘째 「抵抗氣質」은 또 무엇인가? 「反骨」이 批判機能을 活用하여 주장하는 勇氣를 일컫는다.

한국 言論이 「反骨言論」이요, 한국 言論人의 傳統이 「抵抗氣質」에 있다면 이것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傳統이지 그에 대한 非難이나 批評 자체가 言論의 本質을 전혀 認識 못하는 엉뚱한 發言이라고 생각한다. 「反骨」로 나타나는 正義感은 비단 言論의 분야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政府 자체를 포함한 모든 政治분야에서, 經濟活動에서, 社會淨化運動에서 이 「正義」라는 基本觀念이 없이는 社會가 아예 成功되지 아니한다. 正義感을 굽히지 않는 「反骨」이 있기에 나라가 튼튼하고 社會가 살아간다. 忠勇스러운 軍人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忠誠心-그것은 不義의 敵과 싸우겠다는 正義感이다-이 있기에 國家安全이 保障되고 있는 것이다.

「正義感」에 입각한 행동을 「反骨」이라고 할 때 「反骨言論」을 못마땅한듯 批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과연 事理에 맞는 소리일까. 勇氣있게 「反骨」을 행동하는 「抵抗言論」이 적당치 못하다면 不義가 있더라도, 不正이 행해지더라도 못본체, 모른체 지나가라는 말밖에 더 되겠는가. 아마 用語選擇의 錯覺을 일으킨 일부 論者의 「反骨言論」「抵抗言論」 批判인 줄 안다. 「反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節制없는 批判으로 社會를 어지럽게 하는 무분별한 反抗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고 善意로 해석하고 싶다.

또한 言論이 미치는 波及效果를 考慮에 넣지 않거나, 時代와 狀況의 정확한 實相을 認識 못하면서 獨善의인 判斷으로 國論을 그릇되게 향도하는 과격한 言論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表示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부 論者가 「反骨言論」, 「抵抗」이라고 非難하는 속셈을 충분히 짐작하면서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그릇된 表現이 자칫 잘못 認識되거나 오늘의 記錄으로 남아 後世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굳이 「어휘」의 定義를 내려본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世代에 要求되는 가장 큰 「正義具現」력이 무어나고 한다면 國家를 安全하게 民主的 基本秩序를 維持하면서 國利民福을 추구해야 하는 知性的 結集이요, 國際化時代에 적응하면서 民主民族國家 發展을 志向하는 굳센 意志, 즉 外勢에 눌리지 않는 抵抗精神에 있다고 보아 「反骨」과 「抵抗」의 本質을 올바르게 認識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國家利益」이란 概念

지금까지 64年の 「言論波動」에 照明을 맞추어 그 時代的인 狀況과 내 나름의 分析을 해보았다. 그 見解의 延長으로 오늘의 主題인 「言論과 國家利益」을 추구해 볼 차례가 됐다.

「言論의 價値觀」은 그때의 것이나, 지금의 것이나, 한 國家 한 社會의 國家安全과 民主的 基本秩序를 維持하면서 國民의 福利를 增進시키는 데 寄與하고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尊重해야한다는 것을 至上의 使命으로 삼고 있다(言論基本法 第3條). 「國家利益」도 바로 여기에 集約된다. 문제는 이러한 「國家安全」「民主的 基本秩序」「民族의 福利」「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尊重」등 추상적 表現이, 구체적인 政府政策으로나 施策, 行政力 의 表出로 具現됐을 때와 이에서 야기되는 모든 분야의 事象에 있다. 市街地에 길을 하나 낸다 해도 그것이 「國民의 福利」를 실현하는 方法으로 여러 가지 見解가 나올 수 있다. 심지어 같은 政府 안에서도 經濟企劃院과 建設部의 意見이 갈라질 수 있고, 中央政府와 서울市의 見解가 상충될 수도 있다. 하물며 「言論」이란 在野 國民의 위치에서는 政府의 見解와 대립될 수 있다는 것은 뻔한 이치다. 言論機關마다 다르고, 같은 言論機關 안에서도 編輯人의 判斷과 取材記者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다양한 意見이야말로 民主主義的인 특징이다. 누구 한 사람의 意見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價値」가 있는 것이 아니다.

「國家利益」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다양한 民意를 수렴해서 國家意思로 형성시

키고, 그것을 法の 節次와 行政의 執行으로 國家行爲로 나타나게 한다. 그 과정에서 異見이 表出된다 해서 「國家利益」을 손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全體主義的인 思考方式이다. 물론 言論은 國家 속의 言論이요, 그 時代狀況에 存在하는 이상, 國家가 志向하는 政治理念(憲法の 精神)과 時代狀況을 초월해서 行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危險한 思考方式은 「政權의 利益」이나 심지어 「官廳의 利益」을 「國家利益」과 同一視하거나 混同하는 경우다. 「國家利益」에 배치되는 言論이 存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國家利益」을 내세워 「政權의 利益」만을 固守하려는 權力의 生理가 있다. 後進國일수록 특히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國家利益」에 대한 最終的 有權解釋을 어디서 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民主國家에서는 대개 司法이 관장한다. 政府가 「國家利益」이라고 主張해도, 그로써 紛糾가 생기면 裁判에 回附되고, 최종적으로 最高裁判所가 審判한다. 우리나라라 하여 그 예외는 아니다. 法體制上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도 왕왕 政府와 言論간에 갈등을 빚는 것은 「國家利益」에 대한 絶對적인 判斷權이 政府에 있다고 過信하는 行政權力의 萬能思潮에서 起因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國土가 分斷된 國家 安全上의 특수環境과 이제 겨우 近代化의 基礎가 다져져 가는 經濟, 文化, 社會의 時代狀況을 度外視하면서 評價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國家利益」을 위한 여러 가지 法制的規定, 節制의 限界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民主的 基本秩序」를 해치지 않고, 국민의 民主的인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 內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言論은 성실하게 「國家의 利益」에 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가 되는 것은 「國家利益」의 判斷을 「言論」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官僚의 優越意識과 「政府=즉 國家」라는 錯覺때문이다. 일부論者は 이러한 言論의 主張을 「古典的 言論觀」이라고 배척한다. 그렇다면 憲法에 提示된 이외에 여러 가지 구체적 事象에 대한 「國家利益」의 저촉 여부를 누구의 判斷으로 어떤 方法에 의해서 규정 짓게 되는가에 있다.

지금 施行되고 있는 言論基本法에는 仲裁委員會와 放送審議委員會를 두어서, 전

자는 「裁判의 前置要件의 調停」과 「紛糾의 和解」를 위한 機關이요, 후자는 電波統制의 前段階的 審議機關으로 삼고 있다. 여러 가지 法令으로 명확하게 「國家利益」에 배치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事實問題로 紛糾가 생겨날 수 있는 見解의 對立에서 오는 事案에 限해서 判斷하는 機關이다. 이밖의 「國家利益」은 오로지 言論 자체의 良識과 使命感에 의해서 判斷되도록 돼있다.

要는 이 「良識」과 「사명감」이 政府가 意圖하는 方向과 상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國家利益」을 判斷하는 基礎가 되는 狀況認識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른 民主國家와 같이 原則적으로 言論 스스로의 使命이요, 責任에 귀착되는 것이다. 만일 「時代狀況의 認識」이 政府와 다소 다르다고 하여 한국 言論의 批判機能이 政府와 對決하려는 線을 넘은 「抵抗言論」이요, 國家的 危機를 몰고 오는 「體制否定」이라고 白眼視하게 된다면 그 當路者는 얼마나 「自信이 없기에」 그런 「言論否定」의 獨善的 소리를 하는가고 의아스러워질뿐이다. 政府와 言論의 協助精神과 良識으로 調整하는 것이 健全한 民主秩序라고 믿고 있다.

7. 지금의 言論規制

지금의 憲法과 言論規制法 體制는 80年의 「戒嚴下 所産」이다. 참고로 憲法중 64年 당시와 크게 다른 點을 추려 보면, 第20條와 第35條의 ②로 「國家 安全保障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엔 「言論을 規制」할 수 있는 立法 留保條項이 裝置돼 있다. 이 點 「許可制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言論이 享有하는 自由와 權利와 本質的 內容」을 내세울 수는 없게 됐다.

또 言論基本法은 第3條로 「言論의 公的責任」을 例示했고, 특히 이에 대한 強制條項으론 第24條 ④로 「定期刊行物이 登錄된 發行目的이나 第3條 4項(註=暴力行爲등 公共秩序를 紊亂케 하는 違法行爲를 鼓舞·讚揚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한 公的責任을 반복하여 現저하게 違背할 때」 이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하의 期間을 정

하여 그 發刊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限을 文化公報部 長官에게 부여하고 있다(法 第 24條), 法理的으로 따질 때 司法의 判決없이 行政府의 權限으로 言論의 生死與奪을 결정할 수가 있는 問題의 條項이다. 「暴力行爲」 「公共秩序의 紊亂」 「違法行爲의 讚揚 고 무」 「반복」 「현저」 등등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伸縮性을 가질 수 있는 막연한 표현이요, 이러한 根據로 言論機關을 「廢刊」, 「停刊」시킬 수 있는 「規制法」이 시행되고 있는 「時代狀況」임을 直視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第32條(罰則)에는 「編輯人과 廣告責任者가…犯罪을 構成하는 內容」을 排除하지 않았을 때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할 수 있게 했다. 「犯罪을 構成하는 內容」이란 애매한 表現은 자칫하면 「言論」의 機能을 여지없이 위축시킬 수도 있다. 또 言論仲裁委員會의 設置는 새 言論體制의 特記할 만한 대상이다. 다만 이 委員會의 「判定」은 民事訴訟法上의 「和解」에 준하고 定式裁判의 「前置要件」인데다가 行政補助的인 審議機關이므로 직접적으로 言論을 規制하는 法的 強制力은 없다. 한국 言論界의 自律的 倫理機關인 「新聞倫理委員會」의 機能과 거의 重複되면서 현재 併立되고 있다는 사실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관점을 바꾸어, 지금의 言論基本法 施行과 64年の 「言論波動」 당시를 較量해 본다면 실로 착잡한 心情이다. 「言論倫理委員會法」에 그토록 단결해서 氣概 높게 對抗했던 한국 言論이 「言論基本法」에는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그 「時代狀況의 變化」도 현저하거나와 그보다도 言論規制의 內容에 관해서는 國會內 政黨에서 가끔 「改正案」이 나왔을뿐 言論 자체에서는 별다른 輿論이 없음을 본다.

물론 對象과 與件이 다르다면 다르다 할 수는 있다.

첫째 基盤이 되는 「憲法」이 달라졌다. 둘째 戒嚴下의 特殊狀況(1980年 5月 17日 부터 1981年 1月 24日까지)을 外面할 수 없다. 셋째 이 「言論基本法」이전인 80年 11月 14日엔 64개 新聞放送 通信社中 新聞社 11개, 通信社 6개, 放送社 27개가 整備되는 韓國 言論 有史 이래의 「大手術」이 단행된 바로 그 직후이다. 形式은 新聞協會, 放送協會의 「自律的 決議」로 행해졌으나 可謂 革命的 措置였다. 넷째 그와 전후해서 6百餘名의 言論人이 여러 가지 名目으로 言論界에서 「籍」을 잃었다.

이와같은 狀況 아래서 言論基本法 體制가 實施되고, 그 骨格은 變함없이 維持되고 있다. 「言論波動」을 想起하거나 그와 比較해서 오늘의 言論人들의 姿勢를 거론할 形편이 아예 못된다.

그뿐더러, 行政府의 強力한 「政治指導」나 이른바 「言論調整」의 機能도 갖추어지고 있다. 그 運用方法이 問題로 제기된다. 그대신 少數精銳主義로 그 수를 줄인 言論機關은 經營의 體質改善과 合理化로 言論企業 자체가 과거와 다른 새 風土를 造成하고 있는 터이다.

8. 歷史에 대한 責任

結論을 서둘러야 하겠다.

누가 뭐라 하든 한국 言論의 傳統인 「反骨精神」과 「抵抗氣質」은 우리의 矜持요, 生命力이다. 그것을 固守해 나갈 使命은 오늘의 言論人의 責任인 동시에 다른 世代之 言論人에게 價値있게 繼承시켜 나가야 한다. 문제는, 그 「反骨」을 올바르게 발휘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오늘의 한국이 처한 어려운 狀況을 精確하게 認識하자면 그만큼 철저한 世界觀과 情勢의 分析能力이 있어야 한다. 과거보다 몇배의 知識이 필요하고, 훨씬 더한 知性的 判斷力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덮어놓고 政府權力에 反抗하는 「幼稚한 反骨」이 아니다. 무엇이 正義이며, 國家利益인가를 깊이있게 분석해 내고 어떤 方向으로 勇氣있게 國民을 嚮導하고 啓導해야 하는가를 信念있게 行動하라는 正義感, 즉 「反骨精神」이다. 「反骨」은 權力에만 보내는 화살이 아닌 줄을 잘 안다. 그릇된 大衆의 흐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는 데는 「反骨」의 勇氣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어려운 問題에 봉착하면 붓끝을 슬쩍 피해버리는 無氣力한 言論이어서는 안된다.

中心이 될 編輯人이 말아야 할 당연한 歷史에의 責任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혹 프로펠러 航空機時代의 조종사가 襟보제트 航空機의 조종사들에게 과거의 經

驗과 知識을 피력하고 있는 것같은 愚를 지금 이 사람이 犯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프로펠러 時代에는 상상도 못할 巨大한 航空機 속에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機器와 엄청난 科學의 精粹를 구사해 나가야 하는 점보제트機의 현역 조종사들을 향해서 技術的으로 勇躍한다는 것은 난센스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조종사의 보람과 勇氣, 땅과 적고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다수의 乘客을 태우고 安全하게 高空을 運행해야 하는 責任感은 「프로펠러機」 조종사나 「점보제트機」 조종사나 아무 다를 것이 없다. 나는 空理空論을 전개하러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다.

조종사들의 그 보람을 「言論의 使命」에 비유하고 그 勇氣를 「反骨精神」에 견주면 서, 오늘날의 한국 言論이 말아야 할 時代的 責任感의 本流를 「抵抗」의 傳統에 귀착시켜야 한다는 所信 아래, 全國 編輯人 여러분의 보다 높은 使命感과 슬기로운 言論의 召命意識의 提高에 參考가 되었으면 하고 소원한다.